

##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4
------------	-----

제출년월일 : 2005.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내지 제30조, 제32조)
- 나.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 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 다. 현재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로 함(안 제40조의3)
- 라.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 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4조)

### 3. 자치법규안 : 붙임

### 4. 신구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시군세조례 정비안 통보 【경상북도 재정과-897(2005.01.17)】 1부.

##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소득세율"을 "소득세할"로 한다.

제23조 내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종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

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 대상

- (1) 전·담·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 세 표 준>	<세 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영주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의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의사업용

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중 "1,500시시이하"를 각각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제121조제1항제2호"를 "법 제12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절(제71조 내지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중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6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 내지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과세 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2조 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시행령」”으로 하고, 제21조 제1항의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을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제1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37조 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40조의2 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40조의4 제1호 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교통세법”, “관세법”을 각각 “「교통세법」”, “「관세법」”으로 하며, 제41조 제3항 중 “농업·농어촌기본법”을 “「농업·농어촌기본법」”으로 하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 대비 표

【영주시세조례】

현 행	개 정
<p>제3조(세목) ① (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u>8. 종합토지세</u>          ③ (생략)</p> <p>제20조(세율) ① (생략)          ②소득활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u>소득세율</u>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 3. (생략)</p> <p>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u>8. &lt;삭제&gt;</u>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소득세율</u> : .....          2. ~ 3.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현 행	개 정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으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li> <li>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li> <li>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li> <li>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li> <li>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li> <li>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li> </ol>

현 행	개 정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p>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p>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토지</p> <p>가. 종합합산과세 대상</p> <tabl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lt;과세표준&gt;</th> <th style="text-align: center;">&lt;세율&gt;</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이하</td> <td>1,000분의3</td> <td>5,000만원이하</td> <td>1,000분의 2</td> </tr> <tr> <td>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td> <td>3만6천원+ 1,2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5</td> <td>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10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3</td> </tr> <tr> <td>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td> <td>5만6천원+ 1,6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10</td> <td>1억원초과</td> <td>25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3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 1,2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5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3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 1,6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10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3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 1,2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5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3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 1,6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10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현 행	개 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td><td style="width: 75%;">11만6천원 + 2,2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30</td></tr> <tr> <td>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td><td>35만6천원 + 3,0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50</td></tr> <tr> <td>4,000만원초과</td><td>85만6천원 + 4,0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70</td></tr> </table>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 + 2,2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 + 3,0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70	<p>나. 별도합산 과세대상</p> <p>&lt;과세표준&gt; &lt;세율&gt;</p> <p>2억원이하 1,000분의 2</p> <p>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 금 액의 1,000분의 3</p> <p>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p> <p>다. 분리과세 대상</p> <p>(1) 전·답·파수원·목장용지 및 임 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3) (1) 및 (2)의 토지 : 과세표준액 의 1,000분의 2</p> <p>2. 건축물</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 프장(동조동합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외 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 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 + 2,2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 + 3,0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 70						

현 행	개 정
<p><u>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u></p>	<p><b>3. 주택</b></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 이외의 주택</p> <p>&lt;과세표준&gt; &lt;세율&gt;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p> <p><b>4. 선박</b></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p>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b>5. 항공기</b></p> <p>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u>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u></p> <p>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p> <p>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p>

현 행	개 정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 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p><u>을 적용한다.</u></p> <p>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남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2)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3)주택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 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현 행	개 정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영  <u>주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u>  <u>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li> <li>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li> <li>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li> <li>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li> </ol>	<p>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영  <u>주시세감면조례,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u>  <u>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li> <li>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li> <li>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li> <li>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li> <li>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li> <li>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li> </ol>

현 행	개 정
<p>제29조(공용, 공의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의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9조(공용, 공의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의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li> <li>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li> <li>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li> <li>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li> </u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li> <li>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li> <li>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li> <li>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li> </u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축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축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멀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충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남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물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충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과세표준의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과세표준의 세율) ① ..... ..... 1. .....
1. 승용자동차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1,500시시이하 18원 2,000시시이하 19원 2,500시시이하 19원 2,500시시초과 24원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800시시이하 80원 1,000시시이하 100원 1,500시시이하 140원 2,000시시이하 200원 2,000시시초과 220원
1의2. ~ 6. (생략) ② (생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략) 제53조(납세의무자) ①~④(생략) <u>&lt;신 설&gt;</u>	제40조의3(세율) ①..... 1,000분의 215..... .... ②(현행과 같음) 제53조(납세의무자) ①~④(현행과 같음)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담배를 반출한 후 담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세율) ①~②(생략) <u>&lt;신 설&gt;</u>	제55조(세율)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 한다. 1. ~ 5. (생략)	제61조(가산세) ①..... ..... ..... ..... ..... 법 제121조제1항제2호..... .....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p>② ~ ③ (생략)  <u>제 7 절 종 합 토 지 세</u>  <u>&lt;제71조 내지 제82조&gt;</u></p> <p>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2. 건축물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u>&lt;신 설&gt;</u></p> <p>4. (생략)      5. (생략)</p> <p>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u>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p>	<p>② ~ ③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u>&lt;삭 제&gt;</u></p> <p>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현행 4호와 같음)      6. (현행 5호와 같음)</p> <p>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②·····</p>

현 행	개 정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재산세과세대장..... ..... .....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 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 토지 · 건축물 및 주택..... ..... 토지 · 건축물 및 주택..... ..... ..... ..... ..... ..... ..... ..... ..... ②..... ..... 토지 · 건축물 및 주택..... ..... ..... ..... .....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현 행	개 정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7월31일 토 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10월31일	<p>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li> <li>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li> <li>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li> </ol> <p>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 재산세 ..... ..... 재산세 ..... .....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충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이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이 된 때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충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현 행	개 정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총수·면적을 증감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 었거나 총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 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②남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 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 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 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남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 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 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남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 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남세의무 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③남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 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남세의무 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남세의무자 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남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 하고 그 뜻을 남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94조(과세대장의 직권등재) ..... .....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재산세과세대장 ..... .....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조례 정비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86(2005. 1. 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군세조례 정비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  
하니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개정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군세조례 정비(안) 1부. 끝.

##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군(세정과)

★지방행정주사 전강원 지방행정사무관 배병국 재정과장 01/17  
박현규

협조자 지방행정주서보 장진석 지방행정주사 최현찬 지방행정사무관 김시용

시행 재정과-897 ( 2005.01.17. ) 접수 세무과-401 ( 2005.01.18.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311 / 전송 (053)950-2319 / [jungw@gb.go.kr](mailto:jungw@gb.go.kr) / 공개

## 시·군세조례 정비(안)

### 1. 시·군세 세목 조정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7. (생 략)          8. 종합토지세          ③ (생 략)</p>	<p>제00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lt;삭제&gt;          ③ (현행과 같음)</p>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

### 2.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00조(과세대상 등)—————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          ——————          ——————.</p>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

### 3.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군)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p> <p>②권리의 양도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 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p>	<p>제00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군)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li> <li>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li> </ol>

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 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 4.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0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 5.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00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p> <p>-----</p> <p>-----</p>

##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 6.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

현행	개정안
제00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조(세율) ①-----
1. 건축물	1. 토지
가. 주택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억원이하             1,000분의 2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그 가액의 1,000분의 50	10억원이하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다. 분리과세대상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2. 선박	

가. 고급선박그 가액의 1,000분의 50나. 가목이외의 선박그 가액의 1,000분의 33.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3: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합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아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u>&lt;과세표준&gt;</u>	<u>&lt;세율&gt;</u>
---------------------	-------------------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	-------------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	------------------------------

3
---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

②(생 략)	<u>의 1,000분의 3</u> <u>5. 항공기</u>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u> <u>②(현행과 같음)</u>
--------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 7. 재산세의 세율 적용

현 행	개 정 안
<u>&lt;신설&gt;</u>	<p><u>제00조(세율 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u></p> <p>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00조제1항제1호기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0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p>

	<p>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0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0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0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	--

###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방법을 규정

## 8. 재산세의 납기 조정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한다.</p>	<p>제0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li> <li>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li> <li>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li> <li>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li> <li>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li> </ol>

	<u>31일까지</u> 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 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  
를 조정

## 9.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p> <p>○ 시(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li> <li>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li> </ol>	<p>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p> <p>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p> <p>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p>

한 시기	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개정

**10.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00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u>별 제184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00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u>별 제186조</u> ----- ----- -----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 11.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p> <p>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li> <li>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li> <li>3. 생산 및 검사사업용 <u>건축물</u></li> <li>4. 농어민 교육시설용 <u>건축물</u></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u>건축물</u>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0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p> <p>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부동산</u></li> <li>2. -----</li> <li>3. ----- <u>부동산</u></li> <li>4. ----- <u>부동산</u></li> </ol> <p>②----- <u>부동산</u> -----.</p>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 12.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li> <li>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li> </ol>	<p>제00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p> <p>1. <u>건축물 및 주택</u> ----- 2. <u>건축물 및 주택</u> -----</p>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u>&lt;신설&gt;</u>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 13. 자동차세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제0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승용자동차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이하</td> <td>18원</td> <td>800cc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cc이하</td> <td>18원</td> <td>1,000cc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cc이하</td> <td>19원</td> <td>1,500cc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cc이하</td> <td>19원</td> <td>2,000cc이하</td> <td>200원</td> </tr> <tr> <td>3,000cc이하</td> <td>24원</td> <td>2,500cc이하</td> <td>220원</td> </tr> </tbody> </table> <p>1의2. ~ 6. 생략 ②(생략)</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3,000cc이하	24원	2,500cc이하	22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이하</td> <td>-----</td> <td>1,000cc이하</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의2. ~ 6.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	1,000cc이하	-----	-----	-----	-----	-----	-----	-----	-----	-----	-----	-----	-----	-----	-----	-----	-----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3,000cc이하	24원	2,500cc이하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	1,000cc이하	-----																																																		
-----	-----	-----	-----																																																		
-----	-----	-----	-----																																																		
-----	-----	-----	-----																																																		
-----	-----	-----	-----																																																		

## [개정사유]

-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

## 14. 주행세의 세율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 략)	제00조 ①————— 1,000분의 215————— ②(현행과 같음)

## [개정사유]

-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 15.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u>&lt;신 설&gt;</u>	제00조(납세의무자) ① ~ ④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개정사유]

-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

### 16.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세율) ① ~ ②(생 략) <u>&lt;신 설&gt;</u>	제00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범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 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 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 [개정사유]

-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개정

### 17.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00절 종합토지세 <u>&lt;제00조 내지 제00조&gt;</u>	제00절 종합토지세<삭제> <u>&lt;삭제&gt;</u>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

### 18.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절(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제00절(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

<p><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u>2. 건축물</u></p> <p><u>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

### 19.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 20. 도시계획세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0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 ②————— ————— —————재산 세과세대장————— ————— —————.</p>

## [개정사유]

-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조문개정

## 21.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현 행	개 정 안
제0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	제0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p>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군수)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정리

## 22.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0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

## 23. 도시계획세의 납기 조정

현 행			개 정 안
<u>제0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u>			<u>제0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u>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u>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u>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u>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u>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u>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u>
			<u>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u>
			<u>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u>

## [개정사유]

-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공동시설세 납기를 조정

## 24.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 분의 2로 한다.	제00조(세율) 1,000 분의 1.5

## [개정사유]

-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

## 25. 도시계획세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제0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는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수정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수정

## 26.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충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건축물 및 주택 -----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충수·면적을 증감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생략) ③납세의무자가 <u>법 제192조</u>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자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234조의21</u> 의 규정에 관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건축물 및 주택 ----- ②(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94조</u> ----- ----- ④----- ----- ----- ----- ----- <u>법 제194조</u> ----- <u>재산세</u> ----- -----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 27. 도시계획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현 행	개 정 안
제00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재산세과세대장에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조문개정

## 28. 부칙 개정

부 칙(2005. . . . . 조례 제000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00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00장제00절의 개정규정(제00조 내지 제00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사유]

-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함